

文教社會委員會所管

1992年度第2回忠清北道一般會計及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豫備審查報告書

文教社會委員會

# 文教社會委員會所管

1992年度第2回忠清北道一般會計 및 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

## 豫備審查報告

1992. 10. 16

文教社會委員會

### 1. 1992年度 第2回 追更 豫算案 規模

가. 一般會計 歲出豫算案 規模

( 保社環境局, 家庭福祉局 )

나. 醫療保護基金 特別會計 歲入歲出 豫算案 規模

( 保社環境局 )

### 2. 審查經過

가. 提出日字 및 提案者 : 1992年 10月 5日 忠清北道知事

나. 回附日字 : 1992年 10月 5日

다. 上程日字 : 第82回 臨時會 ('92. 10. 15) 上程

- 第1次 文教社會委員會 ('92. 10. 15) 上程, 質疑答辯

( 家庭福祉局 )

- 第2次 文教社會委員會 ('92. 10. 16) 上程, 質疑答辯

( 保社環境局 ), 議決

### 3. 1992年度 第2回 追更 歳入歳出豫算案 規模

ガ. 一般會計 歳出案 規模 (局所管別)

區 分	豫 算 額		既 定		追更豫算額	
	豫 算 額	%	豫 算 額	%	(増△減)	%
合 計	44,521	100	43,150	100	1,371	3.2
保 社 環 境 局	29,434	66	28,236	65	1,198	4.2
家 庭 福 祉 局	15,087	34	14,914	35	173	1.2

カ. 醫療保護基金 特別會計 歳入歳出案 規模

區 分	豫 算 額	既 定	追更豫算額	
			豫 算 額	(増△減) %
保 社 環 境 局	12,582	11,672	910	7.8

### 4.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 別 添 ”

## 5. 豫算案 主要 問題点

- 이번 追更豫算案은 法的經費, 國庫內示 變更, 不遇施設 整備事業, 住民宿願事業과 關聯된 豫算으로 追更要因이 發生되어 計上하였으나, 各種 施策推進費, 不遇施設 慰問等 消耗性 經費가 지나치게 많이 計上된 것이 特徵으로 나타나 아쉬움이 있음.
- 消耗性 經費를 再調整하여 道民에 實質的인 도움이 될 수 있는 廣域 行政住民關聯 事業支援을 擴大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6. 豫算案 審査 調整 內容

### 가. 歲出豫算案 調整 內譯

- 1) 一般會計 歲出 豫算案 △ 60,000천원
  - 가) 保社環境局 所管 (△ 20,000천원)
    - 零細民 保護 : 零細民 保護對策 △ 10,000천원
    - 保健醫政 事業 : 無免許 醫療行爲 團束 推進 △ 5,000천원
    - " : 醫·藥師 市郡交替 合同團束 推進 △ 5,000천원
  - 나) 家庭福祉局 所管 (△ 40,000천원)
    - 兒童福祉 : 不遇兒童保護및 兒童福祉施設 慰問 △ 10,000천원
    - 老人福祉 : 不遇老人保護施設 慰問 △ 15,000천원
    - 婦女福祉 : 低所得 母子家庭 慰問 △ 15,000천원
- 2) 醫療保護基金 特別會計 : 調整 없음

## 7. 審 查 結 果

豫算案 審査 調整內譯과 同一하게 修正 可決

( 參席委員 8人, 贊成委員 8人 )

## 8. 少數意見 要旨

消耗的 經費의 性格이 많은 經常事業費中 各種 事業推進 및 施設慰問 經費를 削減하자는 少數 意見이 있었으나, 調整內容과 같이 合意 調整되었음.

## 9.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

※ 添 附 : 1992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 豫備審査 結果 調書

1992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1部 끝

# 1992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豫備審査結果調書

文教社會委員會 >

( 單位：千円 )

款	章		團體長提出 豫算案	増減額		調整 豫算案	削減 內譯
	項	細項		増額	減額		
合計			1,371,562	60,000	---	1,311,562	
社會計 保健 課境局>			1,198,082	20,000	---	1,178,082	
	生活保護	零細民保護	296,500	10,000	---	286,500	零細民保護 對策
	保健管理	保健醫政 事業	22,720	10,000	---	12,720	無免許 醫療行為團束 推進 (5,000) 醫 藥師 市郡交替 合同團束推進(5,000)
家庭 福祉局>			173,480	40,000	---	133,480	
	家庭福祉	兒童福祉	35,044	10,000	---	25,044	不遇兒童保護 吳 兒童福祉施設 慰問
		老人福祉	38,307	15,000	---	23,307	不遇 老人保護施設 慰問
		婦女福祉	37,500	15,000	---	22,500	低所得 母子家庭 訪問

보사환경국소관  
1992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문교사회위원회

전 문 위 원

# 목 차

1. 예 산 총 괄 .....	2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규모 .....	2
○ 보사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규모 .....	3
2. 예 산 개 요 .....	4
○ 세항별 내역 .....	4
3. 검 토 의 견 .....	6



# 1. 예산총괄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규모

(단위 : 백만원)

경비별	예산안	%	기정예산액	%	증△감	%
계	283,121	100	273,502	100	9,619	3.5
기본경상비	51,032	18.0	49,577	18.1	1,455	2.9
인건비	26,118	9.2	25,567	9.3	551	2.2
관서운영비	13,392	4.7	13,191	4.8	201	1.5
기본경상비	11,522	4.1	10,819	4.0	703	6.5
사업비	171,168	60.5	165,170	60.4	5,998	3.6
경상사업비	15,868	5.6	12,780	4.7	3,088	24.1
주요사업비	155,300	54.9	152,390	55.7	2,910	1.9
기타경비	60,921	21.5	58,755	21.5	2,166	3.7

※ 충청북도일반회계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 2,735억 2백만원에 비하여 3.5%인 96억 1천 9백만원이 증가된 2,831억 2천 1백만원의 규모임

○ 보사환경국일반회계세출예산안규모

(단위 : 백만원)

경 비 별	예 산 안		기정예산액		증 △ 감	
		%		%		%
계	29,434	100	28,236	100	1,198	4.2
기본경상비	3,077	10.4	2,959	10.5	118	4.0
인 건 비	1,749	5.9	1,690	6	59	3.5
관서운영비	681	2.3	654	2.3	27	4.1
기본경상비	647	2.2	615	2.2	32	5.2
사 업 비	24,068	81.8	22,988	81.4	1,080	4.7
경상사업비	1,196	4.1	1,086	3.8	110	10.1
주요사업비	22,872	77.7	21,902	77.6	970	4.4
기 타 경 비	2,289	7.8	2,289	8.1	-	-

※ 보사환경국소관 일반회계 1992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의 세출규모는 기정 예산액 282억3천6백 만원에 비해 4.2%인11억9천8백 만원이 증액되어 294억 3천4백 만원의 규모임

## 2. 예산 개요

첫째, 인건비는 5천 9백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 . 사회복지증진비 4천4백만원
  - . 보건환경연구원 운영비 1천5백만원
- 이 각각 증가되었음.

둘째, 관서운영비는 2천 7백만원이 증가되었는바

- . 사회복지증진비 2천2백만원
  - . 보건환경연구원운영비 4백만원
  - . 환경관리비 1백만원
- 이 각각 증가되는데 기인하고 있음

셋째, 기본경상비는 3천 2백만원이 증가되었는바

- . 사회복지증진비 3백만원
- . 노정관리비 1백만원
- . 의료보험부담금 8백만원
- . 보건의정사업비 2백만원
- . 보건환경연구원운영비 6백만원
- . 위생관리비 6백만원
- . 환경관리비 6백만원

이 각각 증가되는데 기인하고 있음.

넷째, 경상사업비는 1억 1천만원이 증가되었는바

· 사회복지증진비	5백만원
· 노정관리비	2백만원
· 영세민 보호비	2천만원
· 보건 의정사업비	2천1백만원
· 보건환경연구원 운영비	2백만원
· 위생관리비	2천만원
· 환경관리비	4천만원

이 각각 증가된데 기인하고 있음.

다섯째, 주요사업비는 9억 7천만원이 증가되었는바

· 사회복지증진비	5백만원
· 생활 보호비	2억7천6백만원
· 의료원 운영비	1억8천6백만원
· 보건기관 운영비	△ 2천3백만원
· 위생관리비	2천만원
· 환경관리비	5억 6백만원

이 각각 증가하는데 기인하고 있음.

### 3. 검토 의견

보사환경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道 전체 세출예산 2,831억 2천1백만원중 294억 3천 4백만원의 규모로 10.4%를 차지하고 있으며, 局所管 기정세출예산액 282억 3천 6백만원에 비하여 4.2%에 해당되는 11억 9천 8백만원이 증가되었음.

이를 세분해서 분석해 보면

첫째, 인건비는 5천9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환경보호과 신설로 정원(8명)의 증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 공로연수로 총원(1명)분에 대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을 추가계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둘째, 관서운영비는 2천7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환경보호과 신설,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의 공로연수에 따른 총원으로 관서당경비와 각종수당으로 증액되었으며, 또한 5급 이하 전공무원에 지급하던 연가보상금을 1급이하(4명)로 확대 지급토록 내무부지침의한 예산편성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셋째, 기본경상비는 3천2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 |                             |        |
|-----------------------------|--------|
| · 각종업무추진여비                  | 2천7백만원 |
| · 공무원증원에 따른 의료보험비 부담금       | 8백만원   |
| · 충주, 대청댐 선박유류대 과목경정(주요사업비) | △ 6백만원 |
| · 기타 경상비                    | 3백만원   |

으로 기본경상비는 행정활동을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소요경비로 經常的, 硬直性경비로 책정되어야 하나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넷째, 경상사업비는 1억1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 각종시책추진비	1억5백만원
· 산업근로대상선발심사위원 보상	2백만원
·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1백만원
· 보건환경연구원 간담회	2백만원

으로 경상사업비는 행정 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非硬直性경비로 편성토록되어 있으나, 신규사업인 산업근로자대상선발 심사위원 보상금의 산출근거와 각종 시책추진등에 계상된 예산이 消耗性경비는 아닌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다섯째, 주요사업비는 9억7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 사회복지협의회 지원비	1천만원
은 시설종사자 실태조사와 연구사업비 5백만원, 사회복지대회 경비 5백만원으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임.	
· 장애인자녀교육비	△ 1천3백만원
은 지원기준의 변경으로 36명이 감소되어 국비지원 사업비를 감액계상 하였음.	
· 정신질환요양시설 증, 개축	△ 1천8백만원
은 정부예산절감계획에 의하여 청원군 현성원 1천만원, 옥천군 부활원 8백만원이 국비의 減額內示에 따라 감액된 것임.	
· 정신질환요양 난방시설 및 취사기구 교체	2천5백만원
은 옥천군 영생원, 부활원의 보일러및 배관교체비 1천5백만원과 부활원의 주방취사기구 교체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음.	

- 하반기 취로사업비 2억7천6백만원  
 은 사업이 완료된 성립전 예산으로 노임 2억 4천 6백만원과  
 재료비, 행정비 15%범위内인 3천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  
 와 보사부 취로사업시행지침에 따라 계상한 것임.
- 충주의료원 '91운영 결손 보전 1억8천6백만원  
 은 '91 경영수지손실액 4억4백만원중 감가상각비8천8백만원과  
 퇴직적립금 1억3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결손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된 것임.
-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 1천2백만원  
 은 전액국비로 公衆保健醫 定員과 現員의 차이에 대하여 감액  
 内示된데 따라 감액계상된 것임.
- 母性癌 무료검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9백만원  
 은 母性癌검진인원의 증가와 신규사업인 영아의대사이상검사  
 를 위한 예산으로 계상되었음.
- 보건지소 장비구입비 △ 1천9백만원  
 은 치과소독기 지원대상이 감소되어 국비의 감액내시에 따라  
 감액계상된 것임.
- 간이급수시설비 2천만원  
 은 제천군 백운면 간이상수도시설 보조사업비임.
- 광역행정 사업비 5억원  
 은 청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에따른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된것임.

대청, 충주호 자연보호망 및 부교 설치비

6백만원

은 자연보호선의 보호 및 외부인 출입제한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既定 기본경상비의 선박유류대를 과 목경정하려는 것임.

이상 검토한바와 같이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등 소모성경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요사업비는 국비지원에 따른 변동과 기타 사업으로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 되었지만, 사업별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보사환경국소관

1992년도제2회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문교사회위원회

전 문 위 원

# 목 차

1. 예 산 총 괄 .....	12
○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규모 .....	12
2. 예 산 개 요 .....	13
○ 세항별 내역 .....	13
3. 검 토 의 견 .....	13

# 1. 예산총괄

○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입안규모

(단위 : 백만원)

경비별	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	
		%		%		%
계	12,582	100	11,672	100	910	7.8
사업외수입	3,427	27.2	2,517	21.6	910	36.2
보조금	9,155	72.8	9,155	78.4	-	-

○ 세출규모 및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경비별	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	
		%		%		%
계	12,582	100	11,672	100	910	7.8
소계	174	1.4	120	1	54	45
기금운영비	103	0.8	59	0.5	44	74.5
사무비	71	0.6	61	0.5	11	18
의료보호비	12,279	97.6	11,385	97.6	894	7.9
예비비	129	1	167	1.4	△ 38	△ 22.8

## 2. 예산 개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116억 7천 2백만원 보다 7.8%인 9억1천만원이 증가된 125억8천2백만원으로 91년도 市, 郡기금사용 잔액 발생에 따른 잉여금과 이자수입으로 편성되었음.

○ 세 입 액	9억 1천만원
. 91년도 시군의료보호기금운영 잔액	9억1백만원
. 이 자 수 입	9백만원
이 증가된데 기인하며	
○ 세 출 액	9억 1천만원
. 기금운영비 (수수료)	4천 4백만원
. 기금운영비중 사무비	1천만원
. 의료보호비	8억 9천 4백만원
. 예비비	△ 3천 8백만원
으로 각각 증가된데 기인함	

## 3. 검토 의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생활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유지곤란자에 대한 최저생활보호의 일환으로 의료비를 지원 再活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기금운영 잔액의 발생에 따라 예산에 변경을 가하려는 것임.

- 세입은 9억1천만원으로 91년도 시군의료보호기금 결산잉여금 반환금과 기금운용에따른 이자수입으로 편성된 것임.

○ 세출은 9억1천만원으로 그 내용을 세분해 보면,

첫째, 경상사업비 5천4백만원

은 의료보호진료비 심사수수료, 대상자 자격관리수수료단가가 인상되어 부족분을 충당하고, 市郡에서의 업무추진 및 사무비 보조와 대불금 징수여비로 편성되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둘째, 주요사업비 8억9천4백만원

·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비부족분, 보조 10억2천5백만원  
은 시군의 의료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고,

· 의료보호 대불금 △ 1억3천1백만원

은 의료보호대불금 신청실적이 부진하여 예산의 잔액이 예상됨에 따라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비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감액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셋째, 예비비 △ 3천8백만원

은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비 부족분을 보조하기 위하여 감액하려는 것이며, 잔액이 전체예산의 1%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이상 검토한바와 같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사료됨.

가정복지국소관

1992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문교사회위원회

전 문 위 원

# 목 차

1. 예 산 총 괄 .....	2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규모 .....	2
○ 가정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규모 .....	3
2. 예 산 개 요 .....	4
○ 세항별 내역 .....	4
3. 검 토 의 견 .....	5

# 1. 예산총괄

##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규모

(단위 : 백만원)

경 비 별	예 산 안		기정예산액		증 △ 감	
		%		%		%
계	283,121	100	273,502	100	9,619	3.5
기본경상비	51,032	18.0	49,577	18.1	1,455	2.9
인 건 비	26,118	9.2	25,567	9.3	551	2.2
관서운영비	13,392	4.7	13,191	4.8	201	1.5
기본경상비	11,522	4.1	10,819	4.0	703	6.5
사 업 비	171,168	60.5	165,170	60.4	5,998	3.6
경상사업비	15,868	5.6	12,780	4.7	3,088	24.1
주요사업비	155,300	54.9	152,390	55.7	2,910	1.9
기 타 경 비.	60,921	21.5	58,755	21.5	2,166	3.7

- 충청북도일반회계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2,735억2백만원에 비하여 3.5%인 96억1천9백만원이 증가된 2,831억 2천1백만원의 규모임.



○ 가정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경 비 별	예 산 안		기정예산액		증 △ 감	
		%		%		%
계	15,087	100	14,914	100	173	1.2
기본경상비	941	6.2	918	6.1	23	2.5
인 건 비	510	3.4	509	3.4	1	0.2
관서운영비	250	1.6	245	1.6	5	2.0
기본경상비	181	1.2	164	1.1	17	10.4
사 업 비	14,146	93.8	13,996	93.9	150	1.1
경상사업비	652	4.3	515	3.5	137	26.6
주요사업비	13,494	89.5	13,481	90.4	13	0.1
기 타 경 비	-	-	-	-	-	-

※ 가정복지국소관 일반회계 19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149억1천4백만원에 비해 1.2%인 1억7천3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150억 8천 7백만원의 규모임.

## 2. 예 산 개 요

첫째, 인건비는 1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둘째, 관서운영비는 5백만원이 증가되었음.

셋째, 기본경상비는 1천 7백만원이 증가되었는바

· 아동복지비	2백만원
· 노인복지비	3백만원
· 부녀복지비	3백만원
· 청소년복지비	2백만원
· 여성회관운영비	7백만원

이 각각 증가된데 기인하고 있음.

넷째, 경상사업비는 1억 3천 7백만원이 증가되었는바

· 가정의례비	2백만원
· 아동복지사업비	2천만원
· 노인복지사업비	3천5백만원
· 부녀복지사업비	3천4백만원
· 청소년복지사업비	3천7백만원
· 여성회관운영사업비	9백만원

이 각각 증가된데 기인하고 있음.

다섯째, 주요사업비는 1천3백만원이 증가되었는바

· 아동복지사업비	1천3백만원
-----------	--------

이 증가된데 기인하고 있음.

### 3. 검토 의견

가정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道전체 세출예산 2,831억 2천 1백만원 중 150억 8천 7백만원의 규모로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소관 기정예산액에 비하여 1.2%에 해당되는 1억 7천 3백만원이 증가되었음.

이를 세분해서 분석해 보면,

첫째, 인건비는 1백 4십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여성회관 공무원 정액수당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것임.

둘째, 관서운영비는 5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 복리후생비 1백만원  
은 연가보상금의 1급이상 공무원(2명)으로 확대지급으로 증액된 것임.

· 여성회관 난방연료비 2백만원  
은 온풍난방기 설치(기존 석유난로)에 따른 추가 예산임.

· 기관운영비특별관공비 2백만원  
은 여성회관관장의 직급이 상향조정되었으나,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아 추가계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셋째, 기본경상비는 1천 7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 각종업무추진 여비 8백만원

· 홍보물 유인 5백만원

· 외래강사수당 부족분 4백만원

으로 계상되었는바, 행정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됨.

넷째, 경상사업비는 1억3천7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 각종시책추진비	1억1천5백만원
· 교육교재 및 수기, 사례집발간	7백만원
· 청소년상담실 장비보강	4백만원
· 여성회관 물품구입비	9백만원
· 청소년육성 10개년계획 설명회 보상	2백만원

으로 계상하였는바, 경상사업비는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經費와 非硬直性經費로 편성하여야 하나 각종 시책추진에 따른 시설위문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소모적성격이 강한 것으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섯째, 주요사업비는 1천3백만원이 증가되었는바  
충북희망원 院舍증축사업비로 계상되었음.

이상과 같이 본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주요사업비에 比하여 소모적인 성격이 강한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의 여비 및 시책추진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